

한국도서관협회에 바란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말은 라·퐁테에느가 사용한 말로서 로마의 찬란 했던 文明과 雄渾한 能力を 말한때나 또는 하나의 目標를 이루는데 여러 갈래의 方法이나 手段이 있음을 비유할때 흔히 쓰이는 말로 알고 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또 引用되어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말이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大帝國을 建立하였으며 周邊國家에의 統治를 위해서 또는 戰略를 目的하여 現代의 土木學者들도 實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훌륭한 길을 닦아 놓았다. 그럼 우리의 길은 어떠했던가.

저들이 四通八達의 大路를 建設한지 千數百年後 우리들은 新作路라는 이름의 새길이 뚫리고 굽이굽이 휘돌고 감치는 小路에서 내꼴 내마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어왔다. 山를 끼고 재를 넘는 오솔길은 그대로의 抒情과 멎이 없을까만 그길은 낙후의 길이 었으며 文明과 文化傳播의 血管으로서는適合치 않았다.

도로는 文明과 科學 그리고 產業의 發展을 위해 必要不可缺의 것이며 文化形成에 큰 몫을 차지 함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한때 우리는 그들로 부터 조용한 나라라고 불리우고 우리는 저들을 進取의이고 進步의인 西歐의 文明

國이라고 指稱하였다. 그러나 現今의 우리 周邊에는 急進의in 發展과 물결이 파도처럼 밝은 來日을 약속할 수 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수도 서울에서 160여 개국 세계 대 축제가 성대히 마련 되면서 東方의 나라 韓國으로 그길이 트이기 시작 했다.

圖書館도 1987년말 새로운 圖書館法이 개정 마련되었고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이 외형적이나마 크게 달라졌다.

그간 도협(한국도서관협회)에서 圖書館 發展을 위해 반세기 동안 계속추진한 결과 새로운 시발이 小路에서 大路(고속도로)로 진입(인터넷인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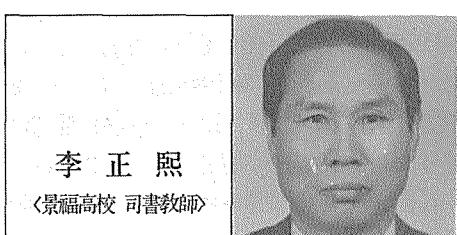
2000년대에는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위해 國內의 各種 圖書館과의 相互協力 基盤을 造成하여 全體圖書館界가 劃期的 發展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 도구 마련의 研究가 시행되어야 한다.

금년이 꼭 30년 圖書館에 몸 담은 나는 나름대로 圖書館의 本態에 관하여 知見을 얻게된 司書로서 모든 學問에의 길은 圖書館을 通하고 그길이 바로 主導임을 알게 되었다. 司書職은 時代가 어떻게 변화더라도 社會發展을 위한 길 役割을 하여야 한다는 이 한마디가 司書職이 지녀야 할 哲學을 충분히 그리고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司書은 철두철미한 奉仕精神을 要求하게 되고 社會development을 위한 奉仕者로서 正道, 좋은 道路가 產業의 發達과 文明에 이바지 하듯이 잘 조직되고 잘 운영되는 圖書館이 많은 量 좋은 內容의 지식과 情報를 축적하고 便達하여 學問과 文化發展에 크게 기여함을 누가 不正할 수 있을까. 近來 우리는 知識의 洪水, 爆發의in 情報量 등의 말을 자주 듣게

되고 現代를 情報化時代라고 규정하고 情報의 處理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글들을 많이 대하게 되고 또 그것의 富宜性을 切實히 認識하게 된다. 이런 社會가 점차 發展하여 그길이 고속도로로 이어질 때 圖書館은 표를 팔고 있는 인터체인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우리들의 先人們이 길을 닦고 建設하는데 소홀하게 落後되었던 바를 想起하여 現在의 우리들은 우리의 길을 建設하고 닦는데 全身全力을 傾注해야겠다.

圖書館을 가꾸고 時代의 흐름에 뒤지지 않게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姿勢가 必要하지 않을까 한다. 圖書館이 지금까지 해왔던 方法이 情報의 처리와 전달 그리고 그 最新性의 維持에 適合 했는지, 새로운 方法과 技術의 收容態勢는 確立하였는지 尚今 解決되어야 할 여러 問題가 많다. 지금은 전산화 시대 수자와 사회에 적응하는 우리들이 되여야겠다.

圖協, 圖書館에 對한 社會의 微溫的인 관심도 그리고 圖書館人에 對한 未洽한 處遇問題등 現實的으로 解決되어야 할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 그러나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밑거름이 되어 後日의 豐饒를 이루는 攝理를 믿고 圖書館人은 謙虛한 씨뿌리는 農者와 같이 우리 앞에 가로 놓인 山積한 問題들을 間斷 없이 解決해 나아가자. 現在의 科學文明도 無數히 많은 실험과 施行錯誤의 產物임을 認定할 때 失敗를 두려워 하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옛말을 상기하고 圖協과 圖書館은 더욱 노력하여 동방의 작은 나라 그길이 「도서는 일생의 벗 독서는 일생의 힘」 나의발전 국가발전 이길이 다가와 있음을 확신한다.



去頭截尾하고, 韓國圖書館協會는 정관 제1조(목적)

와 제4조(사업)에 명시된 바대로 이 나라 圖書館人과 圖書館의 권익 보호와 아울러 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社團法人體이다. 그러므로 전국의 圖書館人们的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을 잘 풀릴 수 있도록 帰받침하여 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個個人 혹은 集團的 發展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帰도움도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各館種別 圖書館의 제반 문제들을 수합 분석하여 發展的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도 제대로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일을 안한 것은 아니다. 지면상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지만 많은 일을 하였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규모의 圖書館 또는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圖書館人은 韓國圖書館協會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불만을 터트린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정관 제4조(사업)에 나열한 목적 사업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사업을 본다면, 그 하고 있는 일 자체가 總括的이고, 統合的인 일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소규모의 圖書館과 말단 圖書館人們에게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各論的인 事業이 아니다.

各館種別 협의회나 部會가 소집되면 각계 계층의 여러 分野에서 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것을 수렴할 뚜렷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散發의 목소리로 흩어져서 별 효과 없이 유야무야되고 만다. 그러다 보니 매년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각 分野別로 수합 분석하여 유익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두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될 것이다.

이렇게 枝葉的이고 말단적인 여론 분석의 기구가 없다 보니 한국도서관협회의 하는 일의 혼재로 말단 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불만이 쌓여서 회비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또한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이것은 다시 한국도서관협회의 재정 문제로 연결되어, 순환적 현상으로 협회가 하고자 하는 事業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일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위원회 규정 제1조와 제3조에 표시된 바 대로 各館種別發展分科委員會를 두어 여러 分野의 두뇌 역할을 하게 하였으면 한다.

전문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의 위원회 종류에 보면, ① 기획발전위원회 ② 분류위원회 ③ 목록위원회 ④ 서지참고위원회 ⑤ 전산화위원회 ⑥ 국내외협력위원회 ⑦ 기타 필요한 위원회 등으로 되어 있다. ①에서 ⑥ 까지의 위원회 업무의 성격을 염격히 분석하여 본다면 이는 문자 그대로 전문적 업무이면서 圖書館 業務의 總括的이고 統合的인 성격만을 띠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관 제1조와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자체의 기구에 이러한 사업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는 것은 더욱 합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재정 낭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⑦의 기타 필요한 위원회에 「공공도서관발전분과위원회」, 「대학도서관발전분과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분과위원회」, 「특수도서관발전분과위원회」 등을 두어 각館種

別 圖書館에서 발생하는 諸般 問題들을 수합 분석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여기에 표시한 명칭은 어디까지나 「가칭」이다 「各館種別研究發展分科委員會」 혹은 「各館種別研究分科委員會」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各館種別發展分科委員會」 속에 「小委員會」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學校圖書館發展分科委員會」를 예로 들어 보자면, 「讀書教育研究小委員會」, 「도서위원회」, 「특별활동도서반지도연구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칭도 「가칭」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전문위원회 규정 제8조 각 위원회 사업」이라는데는, 「정관 제34조(부회)의 규정에 의한 각 부회 또는 협의회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 分野의 여러 목소리가 수합 분석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질 것이며, 또한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일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욱 힘 있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